



HAPPY700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

제출자 : 평창군수

HAPPY700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397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7. 11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□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의거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위탁운영에 대하여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(군수의 책무)
-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(평생교육의 범위)
-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(지원)

□ 위탁운영 목적

- 군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육전문기관(법인·단체)에 위탁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함.

□ 위탁개요

- 위탁기관 : 국내 4년제 대학 및 교육업무 법인·단체
 - ※ 4년제 대학 중 평창군 관내에 캠퍼스를 운영하는 학교 및 대학 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학교는 수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
- 위탁기간 : '18. 3월 ~ 12월 (1,2학기/4개월과정)
- 위탁내용 :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

□ 향후 추진일정

- 주민 수요조사 실시 : '17. 11월
 - 희망 강의 시간(오전, 오후, 저녁)
 - 희망 강좌 조사
 - 희망 학기 조사(1학기, 2학기)
-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 : '17. 12월 ~ '18. 1월
-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: '18. 1월

□ 민간 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

- 교육업무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강의와 전문적인 인력,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육기관에 민간위탁 함으로써
-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평생학습 도시의 기반 및 역량 강화

붙임 1.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시민교양과정 1부.

2. 관계법령 발췌서 1부. 끝.

HAPPY700평창 시민대학 시민교양과정(예시)

연번	강사	직위	과정명	과정내용
1	임부연	서울대 종교학과 강사	퇴계의 자성록 읽기	퇴계의 《자성록》을 함께 읽고 쓰면서 퇴계의 깊은 학문과 고매한 인격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과정
2	우한용	서울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, 소설가	우한용 교수의 산문창작교실	글쓰기를 통해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고, 삶의 가치를 인식하며, 삶의 전망을 세워 나가는 자아확립을 목표로 합니다.
3	신정현	서울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	서양고전 100선	서양문학 여러 주요 작품들의 이해를 통해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
4	이유선	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	현대철학 산책	20세기를 대표하는 서구 현대철학자들의 사상을 누구나 알기 쉽게 소개하는 강의입니다.
5	박남희	연세철학 연구소 전임연구원	예술과 철학의 만남 -예술로 읽는 철학	우리가 당면한 문제, 현실을 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배양해 가보고자 합니다.
6	오세영	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	시창작 교실	초심자들에게 문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쉽게 풀어 이해시킴으로써 문학은 물론 시와 다른 문학 장르간의 특성을 구분하는 안목을 갖추도록 유도하며, 실제 시창작에 임합니다
7	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진		건강특별강좌	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의 건강상식에 대한 강의
8	김종영	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	소통의 수사학 세상을 바꾼 연설	아울러 강의와 실습을 통해, 생각을 발견하고 정리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
9	박형생	서울대 심리학과 강사	지적 대화를 위한 심리학	복잡해보이지만, 복합적인 유기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과학의 원형인 심리학의 세계로 안내할 이 강좌
10	정수경	서울대 미학과 강사	다섯점의 걸작으로 살펴보는 현대 미술의 흐름	현대미술의 핵심적인 특징과 경향, 전개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

관계법령 발췌서

①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수 있다.

③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 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평생교육의 범위) 군수가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.

1.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
2.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
3.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
4.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

제5조(지원)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